

제311회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2년9월17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한민국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안
2. 국가상징물 지정 및 선양에 관한 법률안
3.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4.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5.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10.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정책연구용역관리법안
1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24.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
2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30.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31.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32.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3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46. 大韓地方行政共濟會法 일부개정법률안
4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5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7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77.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8. 지역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7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8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8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8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1.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1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4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5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택시 진입 허용에 관한 청원
 - 152.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53.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54.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55.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56.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57.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률안
 - 158.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9. 경찰제복 및 경찰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안
 - 16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6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6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6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64. 경비업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

심사된 안건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3
1. 대한민국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김정록 · 김희국 · 류지영 · 정우택 · 유기준 · 김성찬 · 정희수 · 황영철 · 신의진 · 주영순 의원 발의) 13
 2. 국가상징물 지정 및 선양에 관한 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 · 김동완 · 김성찬 · 한기호 · 유승민 · 정의화 · 김희선 · 이채익 · 백군기 · 심윤조 · 원유철 · 송영근 · 황진하 · 김춘진 · 김을동 · 문대성 의원 발의) 13
 3.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황영철 · 金永柱 · 이한성 · 김을동 · 김춘진 · 민홍철 · 주영순 · 박인숙 · 송영근 의원 발의) 13
 4.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 · 강기정 · 김성주 · 김윤덕 · 이춘석 · 전정희 · 양승조 · 신학용 · 최동익 · 인재근 의원 발의) 13
 5.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김기식 · 장하나 · 남인순 · 김상희 · 은수미 · 전순옥 · 김용익 · 홍익표 · 강기정 · 한정애 · 서영교 · 최민희 · 김민기 · 윤관석 · 정진후 의원 발의) 13
 6.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 · 강기정 · 정호준 · 박주선 · 강창일 · 김동철 · 임내현 · 이용섭 · 박남춘 · 김영주 · 박혜자 · 황주홍 의원 발의) 13
 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우윤근 · 정진후 · 이낙연 · 신기남 · 김현미 · 장하나 · 강창일 · 전순옥 · 강기정 · 유대운 의원 발의) 13
 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김현 · 도종환 · 조정식 · 김성주 · 정성호 · 최민희 · 배재정 · 전병헌 · 김광진 · 장하나 · 김태년 · 유대운 · 주승용 의원 발의) 13
 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 · 김태원 · 한기호 · 정성호 · 강기윤 · 이한성 · 이우현 · 황진하 · 박인숙 · 류지영 · 이에리사 의원 발의) 13
 10.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민병두 · 최민희 · 박원석 · 민홍철 · 김춘진 · 정성호 · 오제세 · 주승용 · 박주선 · 홍문표 · 유성엽 의원 발의) 13
 1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김현 · 도종환 · 김성주 · 유대운 · 배재정 · 조정식 · 최민희 · 정성호 · 장하나 · 주승용 의원 발의) 13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14. 정책연구용역관리법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 · 유승우 · 金永柱 · 류지영 · 정성호 · 서용교 · 김성찬 · 박인숙 · 김동철 · 김성태 · 김도읍 · 김한표 · 김종훈 의원 발의) 13
 1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金永柱 의원 대표발의)(金永柱 · 이인제 · 문정립 · 이낙연 · 오제세 · 문대성 · 박덕흠 · 이명수 · 성완중 · 박대출 · 김성태 · 신학용 · 박남춘 · 주승용 의원 발의) 13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문병호 · 김기준 · 정성호 · 김광진 · 오제세 · 노영민 · 윤후덕 · 박수현 · 홍영표 · 박남춘 의원 발의) 14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 · 김우남 · 이낙연 · 김재원 · 정병국 · 한선교 · 장윤석 · 한기호 · 이종진 · 김을동 · 김태흠 · 송광호 · 윤명희 의원 발의) 14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 · 이명수 · 안홍준 · 윤영석 · 이재영 · 민홍철 · 이종진 · 홍일표 · 유승우 · 주호영 · 경대수 · 김재원 · 윤명희 · 박인숙 · 홍문표 · 손인춘 · 심윤조 · 배기운 · 전병헌 · 황진하 · 김진태 의원 발의) 14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태흠 · 박완주 · 이윤석 · 김을동 · 성완중 · 문정립 · 김동완 · 金永柱 · 박성호 의원 발의) 14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발의)(박영선 의원 외 126인 발의) 14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신장용 · 김동철 · 이상민 · 유대운 ·

오제세 · 홍중학 · 유성엽 · 최규성 · 우윤근 · 김재윤 의원 발의)	14
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김을동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
24.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2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26.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강동원 · 김경협 · 김미희 · 김민기 · 김선동 · 김재연 · 김제남 · 김현 · 노회찬 · 박남춘 · 박원석 · 백재현 · 서기호 · 심상정 · 오병운 · 유대운 · 은수미 · 이상규 · 이석기 · 이석현 · 이재오 · 이찬열 · 임수경 · 장하나 · 정진후 · 진선미 · 한명숙 · 한정애 의원 발의)	14
2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이찬열 · 배기운 · 오제세 · 이낙연 · 우윤근 · 민홍철 · 최민희 · 정성호 · 김성주 · 김광진 · 김춘진 · 유성엽 의원 발의)	14
28.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2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 · 노철래 · 이명수 · 김재원 · 정의화 · 현영희 · 서용교 · 박창식 · 이재영 · 李宰榮 의원 발의)	14
30.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 · 김동철 · 강기정 · 오제세 · 이낙연 · 우윤근 · 변재일 · 주승용 · 박주선 · 장병완 의원 발의)	14
31.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박기춘 의원 발의)(박기춘 의원 외 126인 발의)	14
32.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박인숙 · 이종훈 · 김태환 · 김태호 · 김재원 · 이자스민 · 김태흠 · 홍지만 · 이에리사 의원 발의)	14
3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용 의원 대표발의)(신장용 · 강기정 · 김동철 · 김영록 · 변재일 · 배기운 · 진성준 · 이원욱 · 박민수 · 김성주 의원 발의)	14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유정복 · 손인춘 · 서용교 · 길정우 · 한선교 · 이한성 · 송광호 · 김재원 · 김장실 · 김을동 · 이재영 · 김형태 의원 발의)	14
3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 의원 대표발의)(홍지만 · 이완영 · 박성호 · 서상기 · 강기운 · 남경필 · 한선교 · 이이재 · 정수성 · 김현숙 · 현영희 · 박인숙 의원 발의)	14
3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강기운 · 김장실 · 박인숙 · 박성호 · 김태원 · 김성찬 · 이한성 · 신성범 · 권성동 · 강길부 의원 발의)	14
3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배기운 · 강창일 · 강기정 · 김우남 · 유은혜 · 유인태 · 문병호 · 신장용 · 장하나 · 김춘진 · 장병완 의원 발의)	14
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 · 주승용 · 박영선 · 우윤근 · 최규성 · 오영식 · 박남춘 · 인재근 · 이찬열 · 유성엽 · 유은혜 의원 발의)	14
3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조정태 · 김영록 · 오제세 · 유성엽 · 김재윤 · 최규성 · 김동철 · 김성태 · 우윤근 의원 발의)	14
4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김재윤 · 문병호 · 배기운 · 오영식 · 전정희 · 이목희 · 조정식 · 최규성 · 우원식 · 유성엽 · 장병완 의원 발의)	15
41.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정호준 · 윤후덕 · 이낙연 · 김우남 · 정성호 · 김성곤 · 배기운 · 심재권 · 전정희 · 최민희 · 조정식 · 홍중학 · 민홍철 · 김광진 · 강창일 · 김관영 의원 발의)	15
4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 · 정갑윤 · 김태원 · 김세연 · 신성범 · 홍지만 · 이주영 · 김성찬 · 서상기 · 강기운 · 나성린 · 안홍준 의원 발의)	15
43.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 · 최규성 · 윤후덕 · 김성곤 · 김진표 · 홍의락 · 김영환 · 강창일 · 김성주 · 오제세 · 우원식 · 도종환 · 주승용 · 심재권 · 정우택 의원 발의)	15
44.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 · 양승조 · 장	

- 병완·조정식·신장용·이미경·진성준·홍종학·오제세·김관영·도중환 의원 발의) 15
45.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최규성·윤후덕·김성곤·김진표·홍의락·김영환·강창일·김성주·우원식·도중환·주승용·심재권·정우택·오제세 의원 발의) 15
46. 大韓地方行政共濟會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4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정두언·송영근·홍지만·민병주·강은희·김세연·박인숙·박성호·변재일·전하진 의원 발의) 15
4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강기정·조경대·김영록·박기춘·최규성·오제세·박영선·이용섭·양승조·유성엽·김재윤·김동철·김성곤·김성태·우윤근·이낙연 의원 발의) 15
4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오제세·김을동·문정립·강석호·김태원·정의화·김춘진·김태흠·박완주 의원 발의) 15
50.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이명수·김재원·한선교·민홍철·한정애·장윤석·홍문표·전정희·정성호 의원 발의) 15
51.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李宰榮·정희수·도중환·안홍준·김태원·김희선·김성곤·金永柱·김을동·민홍철 의원 발의) 15
5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주영순·박인숙·김재원·이종진·오제세·이한성·김경협·유성엽·김성곤·조현룡·김성태·이군현·이노근·김을동·신동우·노철래·홍문표·신성범·정의화·이용섭·이낙연·조해진·권성동·김장실·원유철·김동철·오병윤·김미희·이상규·강창일·강기정·전병헌·이종걸·박홍근·김영록·이석현·우원식·정호준·임내현·이인제·서영교·정희수·주호영·박성효·이장우·배기운·신경민·김선동·金永柱·이명수·문정립·성완중·박상은·송광호 의원 발의) 15
5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5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한정애·서용교·김현숙·이재영·현영희·김성찬·전정희·박인숙·이한성·김정록·김춘진·권은희·강은희 의원 발의) 15
5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배기운·유인태·김상희·진성준·오제세·조정식·김현·이석현·김관영·김성곤·민병두 의원 발의) 15
5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배기운·강창일·강기정·김우남·유은혜·유인태·문병호·신장용·장하나·김춘진·장병완 의원 발의) 15
5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金永柱 의원 대표발의)(金永柱·이인제·정의화·이명수·성완중·박덕흠·문정립·백재현·임수경·유대운·문대성·조명철·진선미 의원 발의) 15
5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이찬열·이용섭·김현미·박남춘·박수현·변재일·신장용·강기정·최재성 의원 발의) 16
5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유승우·강길부·신성범·신동우·이한성·김희선·박성호·이종진·김태원·김성찬 의원 발의) 16
6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윤호중·김현미·박원석·조정식·최재성·설훈·홍종학·이인영·김재연·정성호 의원 발의) 16
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용 의원 대표발의)(신장용·김성주·이낙연·김영록·변재일·이윤석·백재현·김성곤·배기운·우원식·진성준·정성호 의원 발의) 16
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김재윤·김윤덕·한정애·배기운·박민수·김기식·최민희·박남춘·민홍철·김성곤 의원 발의) 16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오제세·배재정·노영민·윤후덕·박수현·홍영표·안민석·김우남·정성호·유기홍 의원 발의) 16

- 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 의원 대표발의)(이만우 · 민현주 · 이장우 · 최봉홍 · 안홍준 · 문대성 · 정갑윤 · 여상규 · 李宰榮 · 김명연 의원 발의) 16
- 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 · 백재현 · 배기운 · 이미경 · 정성호 · 민홍철 · 홍종학 · 김재운 · 김윤덕 · 전정희 · 박영선 · 김명연 · 박남춘 · 부좌현 · 유성엽 · 김현 · 김영환 의원 발의) 16
-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 · 정호준 · 최규성 · 주승용 · 강창일 · 김상희 · 원혜영 · 장하나 · 오제세 · 김성주 · 김윤덕 · 장병완 · 강기정 · 김영록 · 김성곤 · 우윤근 의원 발의) 16
-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 · 유승우 · 권은희 · 김성찬 · 정성호 · 이종진 · 서상기 · 강은희 · 노철래 · 고희선 의원 발의) 16
-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 의원 대표발의)(정문헌 · 유승우 · 김성찬 · 홍문표 · 신성범 · 염동열 · 김영우 · 박인숙 · 이종훈 · 김정록 의원 발의) 16
-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 · 변재일 · 김우남 · 최규성 · 양승조 · 이낙연 · 김성곤 · 박기춘 · 박주선 · 전병헌 의원 발의) 16
-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강기운 · 정문헌 · 이이재 · 김진태 · 김기선 · 김을동 · 이강후 · 김한표 · 염동열 · 한기호 의원 발의) 16
- 7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한기호 · 김용태 · 황영철 · 정희수 · 김희정 · 이이재 · 안덕수 · 김진태 · 김기선 · 염동열 · 이강후 · 정문헌 · 권성동 의원 발의) ... 16
- 7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김현 · 박남춘 · 안규백 · 도종환 · 이윤석 · 조정식 · 김용익 · 우원식 · 장병완 · 최민희 · 정성호 · 김성주 의원 발의) 16
- 7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유정복 · 손인춘 · 길정우 · 한선교 · 이한성 · 송광호 · 김재원 · 김장실 · 김을동 · 유재중 의원 발의) 16
- 7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 · 전정희 · 한기호 · 안덕수 · 이한성 · 강기운 · 정성호 · 이에리사 · 황진하 · 황영철 의원 발의) 16
- 7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김희국 · 이현재 · 김성찬 · 민홍철 · 한선교 · 민현주 · 이한성 · 유승민 · 전정희 · 성완중 · 박인숙 · 김정록 · 최경환 · 김춘진 · 박성호 · 유성엽 의원 발의) 16
- 77.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홍문종 · 이현재 · 주영순 · 김장실 · 정성호 · 김성곤 · 이재영 · 이한성 · 유승민 · 박인숙 · 윤진식 · 김성찬 · 류지영 의원 발의) 16
- 78. 지역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 · 배기운 · 김우남 · 노영민 · 이춘석 · 박영선 · 정성호 · 김재원 · 주승용 · 김영록 · 김광진 의원 발의) 16
- 7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오제세 · 이낙연 · 우원식 · 최규성 · 주승용 · 김동철 · 이찬열 · 윤관석 · 장병완 의원 발의) 16
- 8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 · 박남춘 · 이종걸 · 신장용 · 조정식 · 윤후덕 · 배재정 · 신경민 · 이상호 · 박주선 · 박영선 의원 발의) 17
- 8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이윤석 · 이찬열 · 박기춘 · 장하나 · 김현 · 강창일 · 이상민 · 신장용 · 유대운 · 박혜자 의원 발의) 17
- 8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유대운 · 윤후덕 · 이윤석 · 유인태 · 신기남 · 배기운 · 이상민 · 문재인 · 정성호 · 주호영 · 최민희 · 민홍철 · 정청래 · 서영교 · 전정희 의원 발의) 17
- 8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유정복 · 손인춘 · 길정우 · 한선교 · 이한성 · 송광호 · 김재원 · 김장실 · 김을동 · 유재중 · 김형태 의원 발의) 17
- 8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 의원 대표발의)(유승우 · 신성범 · 홍지만 · 강기운 · 김한표 · 노철래 · 김희국 · 이만우 · 정희수 · 박상은 · 이한성 의원 발의) 17
- 8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김정록 ·

- 박인숙·박성호·정희수·민현주·정문현·이현재·이한성·이명수·이에리사 의원 발의) 17
8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강기윤·정문현·이이재·김진태·李宰榮·김기선·김을동·이강후·김한표·염동열·한기호 의원 발의) 17
8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고희선 의원 대표발의)(고희선·김동완·윤명희·민현주·전하진·김희국·이현재·현영희·정희수·이완영 의원 발의) 17
8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8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유정복·손인춘·서용교·길정우·한선교·이한성·송광호·김재원·김장실·김을동·이재영·김형태 의원 발의) 17
9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91.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9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조해진·안효대·정두언·정병국·심재철·이재오·권성동·이근현·김성태·정몽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6) 17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박완주·최규성·박지원·오제세·주승용·김우남·이윤석·백재현·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51) 17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김세연·안홍준·유기준·이현승·여상규·노철래·전하진·신성범·유재중·박인숙·유일호·주영순·김중훈·윤명희·김도읍·정의화·서용교·나성린·류지영·김정훈·김현숙·이재균·김재경·정갑윤·이채익·이현재·고희선·이진복·김성찬·현영희·박대출 의원 발의) 17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이용섭·한명숙·장병완·김현·안민석·양승조·진성준·박지원·이윤석·홍영표·이연주·임내현 의원 발의) 17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최규성·김성곤·박지원·오제세·주승용·김우남·이윤석·정세균·김민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3) 17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김성곤·박지원·오제세·주승용·김우남·이윤석·백재현·정세균·김민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8) 17
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유기준·윤영석·신성범·유승민·김을동·정갑윤·박성호·이만우·김한표 의원 발의) 17
1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안규백·강창일·김우남·박남춘·김재윤·남인순·김진표·부좌현·신장용·이윤석·김경협·우원식·백재현·정성호 의원 발의) 17
1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배기운·유대운·도종환·최민희·김진표·김우남·박범계·장병완·김영주·장하나 의원 발의) 17
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안홍준·한기호·서용교·주영순·이종훈·류지영·김춘진·이명수·이에리사·황진하·김동완·한선교·김상훈·김재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70) 17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최민희·김우남·최동익·김진표·신장용·임내현·김광진·노영민·이춘석·박영선·정성호·주승용·안민석·김영록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 18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안규백·전병헌·안민석·주승용·이춘석·김동철·이학영·박주선·우윤근·최재성 의원 발의) 18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박민수·오제세·원혜영·김영록·박기춘·홍지만·우윤근·심재권·이춘석 의원 발의) 18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이한성·이현재·김장실·박인숙·김성찬·이재영·강은희·이종진·강석호·경대수·이윤석·이에리사·주영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367) 18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김태원·강기윤·나성린·김관영·

	이한성 · 주호영 · 민홍철 · 최민희 · 유승우 · 김세연 · 황영철 · 김성찬 · 이종훈 · 김태흠 · 박원석 · 윤영석 · 전정희 의원 발의)	18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 · 박성호 · 정갑윤 · 신성범 · 강길부 · 이명수 · 김정록 · 박인숙 · 김성찬 · 원유철 · 이종훈 의원 발의)	18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 · 서상기 · 강기윤 · 이재영 · 이한성 · 이현재 · 이만우 · 윤명희 · 김태원 · 박성호 · 김성곤 · 김영우 의원 발의)	18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 · 배기운 · 민홍철 · 유대운 · 이춘석 · 배재정 · 전정희 · 최재성 · 김춘진 · 유성엽 · 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419)	18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배기운 · 김상희 · 진성준 · 오제세 · 조정식 · 김현 · 이석현 · 민병두 · 김용익 의원 발의)	18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신장용 · 유은혜 · 노웅래 · 유대운 · 배기운 · 우윤근 · 이상민 · 심재권 · 김우남 · 유기홍 · 정성호 · 최민희 · 박인숙 의원 발의)	18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 · 유기준 · 이주영 · 최경환 · 주호영 · 강석호 · 김태환 · 안홍준 · 김성태 · 윤영석 의원 발의)	18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최재천 · 이종걸 · 홍종학 · 서영교 · 전병헌 · 김영주 · 노웅래 · 유기홍 · 최민희 · 유승희 · 이학영 · 정청래 · 민병두 · 김광진 · 박범계 · 진선미 · 박홍근 · 김현미 · 인재근 · 이미경 의원 발의)	18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 김재윤 · 전병헌 · 진성준 · 박영선 · 이낙연 · 신학용 · 김동철 · 유성엽 · 이춘석 · 유인태 · 전정희 · 김광진 · 안민석 · 정청래 · 최동익 · 서영교 의원 발의)	18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 · 이한성 · 민홍철 · 최민희 · 박성호 · 이종진 · 김형태 · 김태원 · 정성호 · 윤영석 · 유성엽 · 김춘진 · 박인숙 · 류지영 · 강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48)	18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김성찬 · 민홍철 · 정성호 · 주호영 · 홍문표 · 주영순 · 송영근 · 이종훈 · 정수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577)	18
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태흠 · 박완주 · 김을동 · 金永柱 · 김춘진 · 문정림 · 황주홍 · 유성엽 · 강동원 의원 발의)	18
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이석현 · 박영선 · 이미경 · 강기정 · 윤관석 · 유기홍 · 노웅래 · 박홍근 · 신장용 · 박범계 · 장하나 · 최민희 · 이원욱 · 민병두 · 이종걸 · 김재윤 · 서영교 · 전병헌 · 문병호 · 김태년 · 전해철 · 김광진 의원 발의)	18
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 · 한기호 · 윤진식 · 정두언 · 류지영 · 정희수 · 김성태 · 김태원 · 서용교 · 주영순 · 김성찬 · 길정우 · 정성호 · 김학용 · 박덕흠 · 김춘진 · 하태경 · 김성곤 · 김종훈 · 이종진 · 심윤조 · 김재원 · 전정희 · 박완주 · 주호영 · 김동완 · 김형태 · 심학봉 · 신학용 · 김태흠 · 신동우 · 유승민 · 이한성 · 김희선 · 민홍철 · 강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773)	18
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김민기 · 이윤석 · 박덕흠 · 홍의락 · 민홍철 · 한명숙 · 이미경 · 박지원 · 최규성 · 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824)	19
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 · 이춘석 · 김성주 · 김우남 · 강동원 · 김관영 · 박원석 · 전정희 · 김춘진 · 우윤근 · 박인숙 · 김영록 의원 발의)(의안번호 855)	19
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김민기 · 이윤석 · 민홍철 · 한명숙 · 이미경 · 박지원 · 우원식 · 김관영 · 김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857)	19
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 · 이춘석 · 김성주 · 김우남 · 강동원 · 박원석 · 전정희 · 김춘진 · 우윤근 · 박인숙 · 김영록 의원 발의)(의안번호 858)	19
1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 · 이종걸 · 전정희 · 원혜영 · 김기준 · 김제남 · 심상정 · 박원석 · 정진후 · 김미희 · 김선동 · 강동원 · 서기호 · 오병윤 · 이상규 · 우원식 · 안민석 · 민병두 · 최원식 · 신경민 · 김영록 · 김재윤 의원 발의)	19

1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김민기·이윤석·한명숙·박지원·주승용·우원식·김성곤·임내현·최규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882) 19
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최규성·김현미·이미경·이석현·정성호·인재근·송호창·박완주·우원식 의원 발의) 19
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김민기·이윤석·한명숙·박지원·주승용·우원식·김성곤·임내현·이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908) 19
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문병호·유대운·민홍철·안민석·박남춘·배기운·이미경·박민수·김성곤·김장실·김윤덕·김우남·임내현·홍종학 의원 발의) 19
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이찬열·최민희·박민수·배기운·전정희·김성주·김재운·유대운·박남춘·이미경·김경협·배재정·장병완·유인태·이석현·노웅래·김윤덕·임내현·김영주 의원 발의) 19
1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고희선·김정록·유승우·윤진식·이한성·전정희·한기호·박대출·김춘진·박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036) 19
1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김기선·강석훈·이한성·정성호·박인숙·이완영·이노근·황진하·박민식·윤진식·민홍철·이강후·최봉홍·이에리사 의원 발의) 19
1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장하나·정성호·이미경·배기운·홍종학·전병헌·문병호·김광진·김민기·신경민·유성엽·최민희·윤후덕·강동원·전정희·김재운·은수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4) 19
1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장하나·이에리사·정성호·유인태·홍종학·문병호·김성주·김광진·김민기·신경민·유성엽·윤후덕·강동원·전정희·김재운·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7) 19
1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전병헌·노웅래·조정식·배재정·양승조·강기정·김영주·김동철·유인태 의원 발의) 19
136.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용익·김윤덕·남인순·도종환·박수현·박완주·배재정·신장용·전순옥·최동익·최민희·최원식·김광진 의원 발의) 19
1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이우현·정우택·이한구·권성동·노철래·홍문중·김장실·이에리사·주영순·안덕수·신동우·권은희·이한성·김기선·윤진식·윤영석·현영희·김근태·이현재·주호영·심윤조·유승우 의원 발의) 19
1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변재일·장병완·김성곤·박기춘·강창일·이명수·이찬열·신학용·남인순 의원 발의) 19
1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배기운·유대운·홍종학·최민희·김진표·최동익·박범계·김영주·장하나 의원 발의) 19
1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유기준·이명수·류지영·김종훈·권은희·박인숙·심윤조·김재원·강기윤·강은희·성완중·이재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87) 20
1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김우남·배재정·노웅래·이낙연·김을동·김관영·홍종학·배기운·홍종학 의원 발의) 20
1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신동우·김정록·유기준·이재영·김성찬·이종진·강석호·강은희·이우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34) 20
1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이한성·이명수·유기준·주영순·박인숙·이만우·권은희·박대출·김성곤·이종진·김성찬 의원 발의) 20
14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김태호·김태원·김정록·서상기·이강후·이종훈·주호영·이균현·김광진 의원 발의) 20
1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정희수·김정록·김성찬·박인숙·서용교·전정희·이종진·김춘진·이현재 의원 발의) 20

1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 의원 대표발의)(정수성 · 조원진 · 정희수 · 고희선 · 김성찬 · 한기호 · 홍지만 · 김태환 · 송영근 · 김동완 의원 발의) 20

1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 · 박남춘 · 변재일 · 김동철 · 도중환 · 심재권 · 배재정 · 신경민 · 백재현 · 원혜영 · 강기정 의원 발의) 20

1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문병호 · 이언주 · 신경민 · 최민희 · 배기운 · 홍중학 · 김기식 · 박원석 · 김광진 · 장하나 의원 발의) 20

1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 · 박홍근 · 강기정 · 이용섭 · 김우남 · 최민희 · 안규백 · 김동철 · 김영환 · 전정희 · 김기준 · 백재현 의원 발의) 20

1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홍문종 · 이현재 · 주영순 · 김장실 · 정성호 · 김성곤 · 이재영 · 이한성 · 유승민 · 박인숙 · 윤진식 · 김성찬 · 류지영 의원 발의) 20

15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택시 진입 허용에 관한 청원(원유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20

152.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 · 이낙연 · 김영환 · 김현 · 김동철 · 강창일 · 김민기 · 김진표 · 원혜영 · 오제세 · 장병완 · 이용섭 · 홍의락 · 강기정 의원 발의) 20

153.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 · 신학용 · 이낙연 · 조정식 · 김우남 · 강기정 · 김성곤 · 양승조 · 박남춘 · 강창일 의원 발의) 20

154.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 · 이명수 · 황영철 · 김태환 · 박성호 · 김정훈 · 李宰榮 · 문대성 · 강은희 · 이자스민 의원 발의) 20

155.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태 의원 대표발의)(김형태 · 김성찬 · 한기호 · 유기준 · 유성엽 · 김한표 · 신성범 · 문대성 · 주호영 · 송영근 · 이철우 의원 발의) 20

156.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안규백 · 김민기 · 김우남 · 홍영표 · 박남춘 · 임수경 · 최규성 · 문희상 · 이낙연 · 배기운 · 유대운 · 진선미 · 이미경 의원 발의) 20

157.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 · 이현재 · 정희수 · 김태흠 · 조현룡 · 경대수 · 민병주 · 김장실 · 박인숙 · 주호영 의원 발의) 20

158.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 · 박상은 · 김진태 · 신경림 · 주승용 · 이재영 · 강기운 · 김희국 · 정희수 · 안홍준 의원 발의) 20

159. 경찰제복 및 경찰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안(안호대 의원 대표발의)(안호대 · 정희수 · 최민희 · 김성찬 · 김성곤 · 김장실 · 이종진 · 주호영 · 심재철 · 박성호 의원 발의) 20

16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 강동원 · 김관영 · 김광진 · 김미희 · 김선동 · 김재윤 · 김춘진 · 문병호 · 민홍철 · 박민수 · 박원석 · 배기운 · 설훈 · 신경민 · 심상정 · 안민석 · 이낙연 · 이미경 · 이학영 · 임내현 · 장하나 · 전병헌 · 전정희 · 전해철 · 정성호 · 주승용 · 최동익 · 최민희 · 최재천 · 홍영표 의원 발의) 20

16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강동원 · 배재정 · 심상정 · 원혜영 · 은수미 · 이미경 · 최민희 · 한명숙 · 한정애 · 홍영표 의원 발의) 21

16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 · 강기정 · 김관영 · 김광진 · 김기준 · 김민기 · 김상희 · 김용익 · 김현 · 김현미 · 남인순 · 도중환 · 박남춘 · 박민수 · 박홍근 · 배재정 · 백군기 · 부좌현 · 서영교 · 설훈 · 신경민 · 신기남 · 신장용 · 안민석 · 우상호 · 유기홍 · 유대운 · 유성엽 · 유은혜 · 유인태 · 은수미 · 이목희 · 이상직 · 이석현 · 이원욱 · 이인영 · 이찬열 · 임내현 · 장병완 · 전정희 · 전해철 · 정진후 · 진선미 · 추미애 · 최규성 · 최동익 · 최민희 · 최재성 · 최재천 · 한정애 · 홍의락 · 홍익표 의원 발의) 21

16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 · 홍지만 · 김희국 · 김상훈 · 권은희 · 서상기 · 유승민 · 유승우 · 주호영 · 조원진 의원 발의) 21

164. 경비업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임수경 · 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21

(10시13분 개의) 다.

○위원장 김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정기국회 제2차 행

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 164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김태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이 경과되어야만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의사일정에는 의사일정 제 7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긴급상정 법안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이를 의사일정에 올리지 않고 별도 추가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32항 내지 135항 4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법안들과의 병합심사를 위하여 이들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전체 법률안 및 청원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김정록 · 김희국 · 류지영 · 정우택 · 유기준 · 김성찬 · 정희수 · 황영철 · 신의진 · 주영순 의원 발의)
2. 국가상징물 지정 및 선양에 관한 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 · 김동완 · 김성찬 · 한기호 · 유승민 · 정의화 · 김희선 · 이채익 · 백군기 · 심윤조 · 원유철 · 송영근 · 황진하 · 김춘진 · 김을동 · 문대성 의원 발의)
3.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황영철 · 金永柱 · 이한성 · 김을동 · 김춘진 · 민홍철 · 주영순 · 박인숙 · 송영근 의원 발의)
4.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 · 강기정 · 김성주 · 김윤

덕 · 이춘석 · 전정희 · 양승조 · 신학용 · 최동익 · 인재근 의원 발의)

5.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김기식 · 장하나 · 남인순 · 김상희 · 은수미 · 전순옥 · 김용익 · 홍익표 · 강기정 · 한정애 · 서영교 · 최민희 · 김민기 · 윤관석 · 정진후 의원 발의)
6.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 · 강기정 · 정호준 · 박주선 · 강창일 · 김동철 · 임내현 · 이용섭 · 박남춘 · 김영주 · 박혜자 · 황주홍 의원 발의)
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우윤근 · 정진후 · 이낙연 · 신기남 · 김현미 · 장하나 · 강창일 · 전순옥 · 강기정 · 유대운 의원 발의)
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김현 · 도종환 · 조정식 · 김성주 · 정성호 · 최민희 · 배재정 · 전병헌 · 김광진 · 장하나 · 김태년 · 유대운 · 주승용 의원 발의)
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 · 김태원 · 한기호 · 정성호 · 강기윤 · 이한성 · 이우현 · 황진하 · 박인숙 · 류지영 · 이에리사 의원 발의)
10.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민병두 · 최민희 · 박원석 · 민홍철 · 김춘진 · 정성호 · 오제세 · 주승용 · 박주선 · 홍문표 · 유성엽 의원 발의)
1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김현 · 도종환 · 김성주 · 유대운 · 배재정 · 조정식 · 최민희 · 정성호 · 장하나 · 주승용 의원 발의)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정책연구용역관리법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 · 유승우 · 金永柱 · 류지영 · 정성호 · 서용교 · 김성찬 · 박인숙 · 김동철 · 김성태 · 김도읍 · 김한표 · 김종훈 의원 발의)
1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金永柱 의원 대표발의)(金永柱 · 이인제 · 문정림 · 이낙연 · 오제세 · 문대성 · 박덕흠 · 이명수 · 성완중 · 박대출 · 김성태 · 신학용 · 박남춘 · 주승용 의원 발의)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문병호·김기준·정성호·김광진·오제세·노영민·윤후덕·박수현·홍영표·박남춘 의원 발의)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김우남·이낙연·김재원·정병국·한선교·장윤석·한기호·이종진·김을동·김태흠·송광호·윤명희 의원 발의)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이명수·안홍준·윤영석·이재영·민홍철·이종진·홍일표·유승우·주호영·경대수·김재원·윤명희·박인숙·홍문표·손인춘·심윤조·배기운·전병헌·황진하·김진태 의원 발의)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태흠·박완주·이윤석·김을동·성완중·문정림·김동완·金永柱·박성호 의원 발의)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발의)(박영선 의원 외 126인 발의)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신장용·김동철·이상민·유대운·오제세·홍종학·유성엽·최규성·우윤근·김재윤 의원 발의)
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김을동 의원의 소개로 제출)
24.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6.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강동원·김경협·김미희·김민기·김선동·김재연·김제남·김현·노회찬·박남춘·박원석·백재현·서기호·심상정·오병운·유대운·은수미·이상규·이석기·이석현·이재오·이찬열·임수경·장하나·정진후·진선미·한명숙·한정에 의원 발의)
2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이찬열·배기운·오제세·이낙연·우윤근·민홍철·최민희·정성호·김성주·김광진·김춘진·유성엽 의원 발의)
28.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노철래·이명수·김재원·정의화·현영희·서용교·박창식·이재영·李宰榮 의원 발의)
30.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동철·강기정·오제세·이낙연·우윤근·변재일·주승용·박주선·장병완 의원 발의)
31.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박기춘 의원 발의)(박기춘 의원 외 126인 발의)
32.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박인숙·이종훈·김태환·김태호·김재원·이자스민·김태흠·홍지만·이에리사 의원 발의)
3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용 의원 대표발의)(신장용·강기정·김동철·김영록·변재일·배기운·진성준·이원욱·박민수·김성주 의원 발의)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유정복·손인춘·서용교·길정우·한선교·이한성·송광호·김재원·김장실·김을동·이재영·김형태 의원 발의)
3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 의원 대표발의)(홍지만·이완영·박성호·서상기·강기윤·남경필·한선교·이이재·정수성·김현숙·현영희·박인숙 의원 발의)
3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김장실·박인숙·박성호·김태원·김성찬·이한성·신성범·권성동·강길부 의원 발의)
3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배기운·강창일·강기정·김우남·유은혜·유인태·문병호·신장용·장하나·김춘진·장병완 의원 발의)
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주승용·박영선·우윤근·최규성·오영식·박남춘·인재근·이찬열·유성엽·유은혜 의원 발의)
3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조경태·김영록·오제세·유성엽·김재윤·최규성·김동철·김성태·우윤근 의원 발의)

4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재윤·문병호·배기운·오영식·전정희·이목희·조정식·최규성·우원식·유성엽·장병완 의원 발의)
41.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정호준·윤후덕·이낙연·김우남·정성호·김성곤·배기운·심재권·전정희·최민희·조정식·홍종학·민홍철·김광진·강창일·김관영 의원 발의)
4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정갑윤·김태원·김세연·신성범·홍지만·이주영·김성찬·서상기·강기윤·나성린·안홍준 의원 발의)
43.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최규성·윤후덕·김성곤·김진표·홍의락·김영환·강창일·김성주·오제세·우원식·도종환·주승용·심재권·정우택 의원 발의)
44.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양승조·장병완·조정식·신장용·이미경·진성준·홍종학·오제세·김관영·도종환 의원 발의)
45.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최규성·윤후덕·김성곤·김진표·홍의락·김영환·강창일·김성주·우원식·도종환·주승용·심재권·정우택·오제세 의원 발의)
46. 大韓地方行政共濟會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정두언·송영근·홍지만·민병주·강은희·김세연·박인숙·박성호·변재일·전하진 의원 발의)
4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강기정·조경태·김영록·박기춘·최규성·오제세·박영선·이용섭·양승조·유성엽·김재윤·김동철·김성곤·김성태·우윤근·이낙연 의원 발의)
4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오제세·김을동·문정림·강석호·김태원·정의화·김춘진·김태흠·박완주 의원 발의)
50.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이명수·김재원·한선교·민홍철·한정애·장윤석·홍문표·전정희·정성호 의원 발의)
51.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李宰榮·정희수·도종환·안홍준·김태원·김희선·김성곤·金永柱·김을동·민홍철 의원 발의)
5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주영순·박인숙·김재원·이종진·오제세·이한성·김경협·유성엽·김성곤·조현룡·김성태·이군현·이노근·김을동·신동우·노철래·홍문표·신성범·정의화·이용섭·이낙연·조혜진·권성동·김장실·원유철·김동철·오병윤·김미희·이상규·강창일·강기정·전병헌·이종걸·박홍근·김영록·이석현·우원식·정호준·임내현·이인제·서영교·정희수·주호영·박성호·이장우·배기운·신경민·김선동·金永柱·이명수·문정림·성완중·박상은·송광호 의원 발의)
5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한정애·서용교·김현숙·이재영·현영희·김성찬·전정희·박인숙·이한성·김정록·김춘진·권은희·강은희 의원 발의)
5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배기운·유인태·김상희·진성준·오제세·조정식·김현·이석현·김관영·김성곤·민병두 의원 발의)
5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배기운·강창일·강기정·김우남·유은혜·유인태·문병호·신장용·장하나·김춘진·장병완 의원 발의)
5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金永柱 의원 대표발의)(金永柱·이인제·정의화·이명수·성완중·박덕흠·문정림·백재현·임수경·유대운·문대성·조명철·진선미 의원 발의)

5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이찬열·이용섭·김현미·박남춘·박수현·변재일·신장용·강기정·최재성 의원 발의)
5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유승우·강길부·신성범·신동우·이한성·김희선·박성호·이종진·김태원·김성찬 의원 발의)
6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윤호중·김현미·박원석·조정식·최재성·설훈·홍종학·이인영·김재연·정성호 의원 발의)
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용 의원 대표발의)(신장용·김성주·이낙연·김영록·변재일·이윤석·백재현·김성곤·배기운·우원식·진성준·정성호 의원 발의)
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김재윤·김윤덕·한정애·배기운·박민수·김기식·최민희·박남춘·민홍철·김성곤 의원 발의)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오제세·배재정·노영민·윤후덕·박수현·홍영표·안민석·김우남·정성호·유기홍 의원 발의)
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 의원 대표발의)(이만우·민현주·이장우·최봉홍·안홍준·문대성·정갑윤·여상규·李宰榮·김명연 의원 발의)
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백재현·배기운·이미경·정성호·민홍철·홍종학·김재윤·김윤덕·전정희·박영선·김명연·박남춘·부좌현·유성엽·김현·김영환 의원 발의)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정호준·최규성·주승용·강창일·김상희·원혜영·장하나·오제세·김성주·김윤덕·장병완·강기정·김영록·김성곤·우윤근 의원 발의)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유승우·권은희·김성찬·정성호·이종진·서상기·강은희·노철래·고희선 의원 발의)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 의원 대표발의)(정문헌·유승우·김성찬·홍문표·신성범·염동열·김영우·박인숙·이종훈·김정록 의원 발의)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변재일·김우남·최규성·양승조·이낙연·김성곤·박기춘·박주선·전병헌 의원 발의)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강기윤·정문헌·이이재·김진태·김기선·김을동·이강후·김한표·염동열·한기호 의원 발의)
72. 점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한기호·김용태·황영철·정희수·김희정·이이재·안덕수·김진태·김기선·염동열·이강후·정문헌·권성동 의원 발의)
73. 점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김현·박남춘·안규백·도종환·이윤석·조정식·김용익·우원식·장병완·최민희·정성호·김성주 의원 발의)
74. 점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유정복·손인춘·길정우·한선교·이한성·송광호·김재원·김장실·김을동·유재중 의원 발의)
75. 점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전정희·한기호·안덕수·이한성·강기윤·정성호·이예리사·황진하·황영철 의원 발의)
7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김희국·이현재·김성찬·민홍철·한선교·민현주·이한성·유승민·전정희·성완중·박인숙·김정록·최경환·김춘진·박성호·유성엽 의원 발의)
77.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홍문종·이현재·주영순·김장실·정성호·김성곤·이재영·이한성·유승민·박인숙·윤진식·김성찬·류지영 의원 발의)
78. 지역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배기운·김우남·노영민·이춘석·박영선·정성호·김재원·주승용·김영록·김광진 의원 발의)
7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오제세·이낙연·우원식·최규성·주승용·김동철·이찬열·윤관석·장병완 의원 발의)

- 8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박남춘·이종걸·신장용·조정식·윤후덕·배재정·신경민·우상호·박주선·박영선 의원 발의)
- 8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이윤석·이찬열·박기춘·장하나·김현·강창일·이상민·신장용·유대운·박혜자 의원 발의)
- 8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유대운·윤후덕·이윤석·유인태·신기남·배기운·이상민·문재인·정성호·주호영·최민희·민홍철·정청래·서영교·전정희 의원 발의)
- 8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유정복·손인춘·길정우·한선교·이한성·송광호·김재원·김장실·김을동·유재중·김형태 의원 발의)
- 8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 의원 대표발의)(유승우·신성범·홍지만·강기윤·김한표·노철래·김희국·이만우·정희수·박상은·이한성 의원 발의)
- 8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김정록·박인숙·박성호·정희수·민현주·정문헌·이현재·이한성·이명수·이에리사 의원 발의)
- 8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강기윤·정문헌·이재·김진태·李宰榮·김기선·김을동·이강후·김한표·염동열·한기호 의원 발의)
- 8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고희선 의원 대표발의)(고희선·김동완·윤명희·민현주·전하진·김희국·이현재·현영희·정희수·이완영 의원 발의)
- 8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유정복·손인춘·서용교·길정우·한선교·이한성·송광호·김재원·김장실·김을동·이재영·김형태 의원 발의)
- 9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1.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조해진·안효대·정두언·정병국·심재철·이재오·권성동·이군현·김성태·정몽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6)
-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박완주·최규성·박지원·오제세·주승용·김우남·이윤석·백재현·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51)
-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김세연·안홍준·유기준·이현승·여상규·노철래·전하진·신성범·유재중·박인숙·유일호·주영순·김종훈·윤명희·김도읍·정의화·서용교·나성린·류지영·김정훈·김현숙·이재균·김재경·정갑윤·이채익·이현재·고희선·이진복·김성찬·현영희·박대출 의원 발의)
-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이용섭·한명숙·장병완·김현·안민석·양승조·진성준·박지원·이윤석·홍영표·이연주·임내현 의원 발의)
-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최규성·김성곤·박지원·오제세·주승용·김우남·이윤석·정세균·김민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3)
-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김성곤·박지원·오제세·주승용·김우남·이윤석·백재현·정세균·김민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8)
- 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유기준·윤영석·신성범·유승민·김을동·정갑윤·박성호·이만우·김한표 의원 발의)
- 1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안규백·강창일·김우남·박남춘·김재윤·남인순·김진표·부좌현·신장용·이윤석·김경협·우원식·백재현·정성호 의원 발의)
- 1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배기운·유대운·도종환·최민희·김진표·김우남·박범계·장병완·김영주·장하나 의원 발의)
- 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안홍준·한기호·서용교·주영순·이종훈·류지영·김춘진·이명수·이에리사·황진하·김동완·한선교·김상훈·김재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70)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최민희·김우남·최동익·김진표·신장용·임내현·김광진·노영민·이춘석·박영선·정성호·주승용·안민석·김영록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안규백·전병헌·안민석·주승용·이춘석·김동철·이학영·박주선·우윤근·최재성 의원 발의)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박민수·오제세·원혜영·김영록·박기춘·홍지만·우윤근·심재권·이춘석 의원 발의)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이한성·이현재·김장실·박인숙·김성찬·이재영·강은희·이종진·강석호·경대수·이윤석·이에리사·주영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367)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김태원·강기윤·나성린·김관영·이한성·주호영·민홍철·최민희·유승우·김세연·황영철·김성찬·이종훈·김태흠·박원석·윤영석·전정희 의원 발의)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박성호·정갑윤·신성범·강길부·이명수·김정록·박인숙·김성찬·원유철·이종훈 의원 발의)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서상기·강기윤·이재영·이한성·이현재·이만우·윤명희·김태원·박성호·김성곤·김영우 의원 발의)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배기운·민홍철·유대운·이춘석·배재정·전정희·최재성·김춘진·유성엽·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419)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배기운·김상희·진성준·오제세·조정식·김현·이석현·민병두·김용익 의원 발의)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신장용·유은혜·노웅래·유대운·배기운·우윤근·이상민·심재권·김우남·유기홍·정성호·최민희·박인숙 의원 발의)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유기준·이주영·최경환·주호영·강석호·김태환·안홍준·김성태·윤영석 의원 발의)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최재천·이종걸·홍종학·서영교·전병헌·김영주·노웅래·유기홍·최민희·유승희·이학영·정청래·민병두·김광진·박범계·진선미·박홍근·김현미·인재근·이미경 의원 발의)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재윤·전병헌·진성준·박영선·이낙연·신학용·김동철·유성엽·이춘석·유인태·전정희·김광진·안민석·정청래·최동익·서영교 의원 발의)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이한성·민홍철·최민희·박성호·이종진·김형태·김태원·정성호·윤영석·유성엽·김춘진·박인숙·류지영·강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48)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김성찬·민홍철·정성호·주호영·홍문표·주영순·송영근·이종훈·정수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577)
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태흠·박완주·김을동·金永柱·김춘진·문정림·황주홍·유성엽·강동원 의원 발의)
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이석현·박영선·이미경·강기정·윤관석·유기홍·노웅래·박홍근·신장용·박범계·장하나·최민희·이원욱·민병두·이종걸·김재윤·서영교·전병헌·문병호·김태년·전해철·김광진 의원 발의)
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한기호·윤진식·정두언·류지영·정희수·김성태·김태원·서용교·주영순·김성찬·길정우·정성호·김학용·박덕흠·김춘진·하태경·김성곤·김종훈·이종진·심윤조·김재원·전정희·박완주·주호영·김동완·김형태·심학봉·신학용·김태흠·신동우·유승민·이한성·김희선·민홍철·강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773)

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김민기·이윤석·박덕흠·홍의락·민홍철·한명숙·이미경·박지원·최규성·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824)
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이춘석·김성주·김우남·강동원·김관영·박원석·전정희·김춘진·우윤근·박인숙·김영록 의원 발의)(의안번호 855)
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김민기·이윤석·민홍철·한명숙·이미경·박지원·우원식·김관영·김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857)
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이춘석·김성주·김우남·강동원·박원석·전정희·김춘진·우윤근·박인숙·김영록 의원 발의)(의안번호 858)
1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이종걸·전정희·원혜영·김기준·김제남·심상정·박원석·정진후·김미희·김선동·강동원·서기호·오병윤·이상규·우원식·안민석·민병두·최원식·신경민·김영록·김재윤 의원 발의)
1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김민기·이윤석·한명숙·박지원·주승용·우원식·김성곤·임내현·최규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882)
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최규성·김현미·이미경·이석현·정성호·인재근·송호창·박완주·우원식 의원 발의)
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김민기·이윤석·한명숙·박지원·주승용·우원식·김성곤·임내현·이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908)
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문병호·유대운·민홍철·안민석·박남춘·배기운·이미경·박민수·김성곤·김장실·김윤덕·김우남·임내현·홍종학 의원 발의)
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이찬열·최민희·박민수·배기운·전정희·김성주·김재윤·유대운·박남춘·이미경·김경협·배재정·장병완·유인태·이석현·노웅래·김윤덕·임내현·김영주 의원 발의)
1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고희선·김정록·유승우·윤진식·이한성·전정희·한기호·박대출·김춘진·박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036)
1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효 의원 대표발의)(박성효·김기선·강석훈·이한성·정성호·박인숙·이완영·이노근·황진하·박민식·윤진식·민홍철·이강후·최봉홍·이에리사 의원 발의)
1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장하나·정성호·이미경·배기운·홍종학·전병헌·문병호·김광진·김민기·신경민·유성엽·최민희·윤후덕·강동원·전정희·김재윤·은수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4)
1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장하나·이에리사·정성호·유인태·홍종학·문병호·김성주·김광진·김민기·신경민·유성엽·윤후덕·강동원·전정희·김재윤·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7)
1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전병헌·노웅래·조정식·배재정·양승조·강기정·김영주·김동철·유인태 의원 발의)
136.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용익·김윤덕·남인순·도종환·박수현·박완주·배재정·신장용·전순옥·최동익·최민희·최원식·김광진 의원 발의)
1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이우현·정우택·이한구·권성동·노철래·홍문종·김장실·이에리사·주영순·안덕수·신동우·권은희·이한성·김기선·윤진식·윤영석·현영희·김근태·이현재·주호영·심윤조·유승우 의원 발의)
1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변재일·장병완·김성곤·박기춘·강창일·이명수·이찬열·신학용·남인순 의원 발의)
1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배기운·유대운·홍종학·최민희·김진표·최동익·박범계·김영주·장하나 의원 발의)

1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유기준·이명수·류지영·김중훈·권은희·박인숙·심윤조·김재원·강기윤·강은희·성완중·이재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87)
1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김우남·배재정·노웅래·이낙연·김을동·김관영·홍종학·배기운·홍종학 의원 발의)
1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신동우·김정록·유기준·이재영·김성찬·이종진·강석호·강은희·이우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34)
1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이한성·이명수·유기준·주영순·박인숙·이만우·권은희·박대출·김성곤·이종진·김성찬 의원 발의)
14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김태호·김태원·김정록·서상기·이강후·이종훈·주호영·이균현·김광진 의원 발의)
1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정희수·김정록·김성찬·박인숙·서용교·전정희·이종진·김춘진·이현재 의원 발의)
1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 의원 대표발의)(정수성·조원진·정희수·고희선·김성찬·한기호·홍지만·김태환·송영근·김동완 의원 발의)
1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박남춘·변재일·김동철·도중환·심재권·배재정·신경민·백재현·원혜영·강기정 의원 발의)
1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문병호·이언주·신경민·최민희·배기운·홍종학·김기식·박원석·김광진·장하나 의원 발의)
1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박홍근·강기정·이용섭·김우남·최민희·안규백·김동철·김영환·전정희·김기준·백재현 의원 발의)
1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홍문종·이현재·주영순·김장실·정성호·김성곤·이재영·이한성·유승민·박인숙·윤진식·김성찬·류지영 의원 발의)
15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택시 진입 허용에 관한 청원**(원유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2.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이낙연·김영환·김현·김동철·강창일·김민기·김진표·원혜영·오제세·장병완·이용섭·홍의락·강기정 의원 발의)
153.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신학용·이낙연·조정식·김우남·강기정·김성곤·양승조·박남춘·강창일 의원 발의)
154.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이명수·황영철·김태환·박성호·김정훈·李宰榮·문대성·강은희·이자스민 의원 발의)
155.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태 의원 대표발의)(김형태·김성찬·한기호·유기준·유성엽·김한표·신성범·문대성·주호영·송영근·이철우 의원 발의)
156.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안규백·김민기·김우남·홍영표·박남춘·임수경·최규성·문희상·이낙연·배기운·유대운·진선미·이미경 의원 발의)
157.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이현재·정희수·김태흠·조현룡·경대수·민병주·김장실·박인숙·주호영 의원 발의)
158.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박상은·김진태·신경립·주승용·이재영·강기윤·김희국·정희수·안홍준 의원 발의)
159. **경찰제복 및 경찰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정희수·최민희·김성찬·김성곤·김장실·이종진·주호영·심재철·박성호 의원 발의)
16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강동원·김관영·김광진·김미희·김선동·김재윤·김춘진·문병호·민홍철·박민수·박원석·배기운·설훈·신경민·심상정·안민석·이낙연·이미경·이학영·임내현·장하나·전병헌·전정희·전해철·정성호·주승용·최동익·최민희·최재천·홍영표 의원 발의)

16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강동원·배재정·심상정·원혜영·은수미·이미경·최민희·한명숙·한정애·홍영표 의원 발의)

16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강기정·김관영·김광진·김기준·김민기·김상희·김용익·김현·김현미·남인순·도종환·박남춘·박민수·박홍근·배재정·백군기·부좌현·서영교·설훈·신경민·신기남·신장용·안민석·우상호·유기홍·유대운·유성엽·유은혜·유인태·은수미·이목희·이상직·이석현·이원욱·이인영·이찬열·임내현·장병완·전정희·전해철·정진후·진선미·추미애·최규성·최동익·최민희·최재성·최재천·한정애·홍의락·홍익표 의원 발의)

16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홍지만·김희국·김상훈·권은희·서상기·유승민·유승우·주호영·조원진 의원 발의)

164. 경비업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임수경·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7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하고, 제1항부터 제164항까지 16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55항, 제72항, 제95항, 제111항, 제136항, 제137항 등 여러 건의 의원발의 법안은 구두로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의원발의 법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42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및 제111항에 대하여는 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의원** 존경하는 김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출신 원혜영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해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감시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이 특권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수의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2월 전국 25개 지자체 점검을 통해 발표한 감사 결과, 경기도 포천시 A 시의 원의 가족 지분이 50% 이상인 업체와 28건, 3억 4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인천시 용진구는 B 군의원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5건, 6억 6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8개 시·군이 10명의 지방의원과 관련된 업체와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가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을 요구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의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환** 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4항에 대하여는 유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의원** 위원장님, 제가 2건 제안설명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1건만 지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환** 아, 미안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원혜영 의원 이어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4월과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총 254회의 보궐선거 등에서 약 848억 원의 세금이 소요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이 의심받는 등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해 두 차례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을 한 번으로 줄임으로써 잦은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성을 해소함은 물론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고 잦은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 따르면 부재자 투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등기우편을 통한 서면으로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재자 신고 기간이 5일 이내로 아주 짧아 이 기간 동안 우편으로 신고하는 것은 시간상 촉박하여 부재자 신고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재자 신고를 서면 이외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재자 신고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감소시키고 부재자 투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본인 확인은 금융, 전자금융 거래 시 활용하는 공인인증서 등의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타인에 의한 부재자 신고를 방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다들 선거를 봄 가을에 하면서 지나치게 선거에 집중하고 여러 가지 정국의 불안정성이 야기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19대 국회가 새로 출범하고, 또 18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1년에 1회 선거를 함으로써 정국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배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환 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에 대해서 유승우 의원님……

○李燦烈 委員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환 예.

○李燦烈 委員 지금 존경하는 원혜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내 주신 유인물이 암만 찾아봐도 없네요. 어디 있습니까, 이것?

○수석전문위원 이원탁 검토보고에 있습니다.

○李燦烈 委員 검토보고 여기 이 중에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태환 검토보고서에……

○李燦烈 委員 의원님이 직접 와서 하시는데 이것 자료를 똑바로 찾아 봐 줘야지. 어디 있어요, 여기?

○입법조사관보 남정희 컴퓨터 안에……

○李燦烈 委員 단말기라고 얘기를 안 하셨지, 유인물이라고 그랬지.

○강기윤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태환 예.

○강기윤 위원 지금 유인물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회순이 있을 겁니다. 회순이 있으면 제안설명서를 순서에 입각해서 둠으로써 우리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데 설명을 하시는데 찾는다고 지금 시간이 허비되고 있거든요.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환 강 위원님, 지금 단말기에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설명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로……

찾는 방법은 우리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조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4항에 대해서는 유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우 의원 존경하는 김태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에는 일정한 특정 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양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의무에 대한 조항이 없어 법적 근거 부재의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하여 특정소방대상물 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소방시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의 효율성을 담보하게 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환** 유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에 대하여, 한기호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한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의원** 저는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 한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해에 입법하여 주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은 분단 6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은 어느 낙후 지역보다도 더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에 지난 18대 국회에서 접경지역 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11년 만에 격상시키는 등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접경지역은 철도, 도로 등 사

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접경지역의 SOC 사업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항상 후순위로 밀렸거나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동안 군사지역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아온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순위 조정 시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여부에 관한 검토를 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대응 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접경지역 주민들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국가 안보의 최일선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한 채 지내 왔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전체 시·군 중에서 진입도로나 4차선이 아닌 곳은 전국의 세 곳이며, 그중의 두 곳이 접경지역입니다. 이는 사람이 사는 지역이라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동 개정안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염원이 자 사람답게 살기 위한 취지로 만든 개정안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동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환** 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6항에 대하여 황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의원** 전남 장흥·강진·영암 출신 황주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동료 의원 열네 분과 함께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통제, 주민의 직접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특권일 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남용이며, 법 앞의 현저한 불평등 사례일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법 앞의 불평등을 법 앞의 평등으로 전환시켜 법치주의의 완결성을 높이고 정치개혁을 촉진하는 한편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소환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국민소환의 소환청구권자는 청구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상한인구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국민으로 하고, 국민소환투표인은 청구일 현재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선거권자의 100분의 1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제한하여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한 소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한 가지 특별한 사항으로는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을 비례대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국회의원의 선출과정은 특정 지역구에서 이루어지지만 당선 이후의 업무영역과 의정활동의 파장은 전국에 미치고 그 성패의 파장을 온 국민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국회 쇄신, 국회 개혁의 의지를 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들께서는 국회의 개혁 의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며, 국민이 뽑아 주셨다면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는 이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적 신뢰와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환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께서 부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시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의 취지를 살피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환 황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7항에 대하여 이한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성 의원 존경하는 김태환 행정안전위원회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경북 문경·예천 출신 이한성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자발찌 부착제도 등 성범죄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성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경력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우범자로 분류하여 우범자 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나 법률의 근거 없이 경찰청 예규만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극적인 활동을 하는 등 운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경우 우범자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그동안 법률의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에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범죄 우범자 관리를 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환 이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1항에 대하여는 김경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의원 경기도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의뢰한 시설주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비업의 육성과 발전 그리고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한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설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의 목적이 현실에서는 잘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얼마 전 목격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안산 SJM 등에서 일어났던 컨택터스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쟁의 현장에서 시설주와 민간 경비업자들은 반인륜적인 폭력을 자행하였고, 그 결과 노동자의 기본권 그리고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역경비를 현장에 투입할 때 절차나 방법이 대단히 또한 복잡해서 현실적으로 실제로 지켜지지도 않고 경찰에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 많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민간경비업체가 개입토록 허용하는 것은 과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

호하려는 경비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토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 간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하거나 진행 중인 장소에서 경비업자가 그 경비 대상 장소의 내·외부에 경비원을 배치시키는 등 노사 간의 교섭이나 분류에 개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시설주에 대해서도 쟁의 현장에 경비업자와 경비원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경비인력이 노사 간의 분쟁에 절대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노사관계는 대단히 특수한 관계입니다.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노사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봤을 때 노사관계는 항상 갈등이 존재한 반면에 다른 이면에 또한 협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싸웠다고 해서 상대를 부정할 수가 없고 다시 화해하고 협력해야 하며 때로는 쉽게 헤어질 수 없는 부부관계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 특수한 관계에 외부세력을 개입시키는 것, 특히 용역경비를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이를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장기화시킨다는 것이 아직까지의 즉 노사관계의 현장에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이러한 면들을 잘 고려해서 이제 이러한 민간의 폭력이 더 이상 우리 산업현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시대의 화두인 경제민주화는 경제활동의 주체인 근로자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근로자가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데 이를 불법적으로 경비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저지하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경비업체의 자격과 요건을 강화시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단순히 일부 보완하거나 꿰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그 원인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셔서 최대한의 관심과 애정으로 동 개정안을 꼭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환** 김경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2항에 대해서 임수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경 의원** 존경하는 김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임수경 의원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노사분규 현장, 재개발사업장, 각종 개발 관련 분쟁 현장에서 경비업체들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치된 경비원들이 경비라는 예방적·방어적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노동쟁의 현장의 노조원들을 해산시키는 등 위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 강제 퇴거 등 위법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력 전과자, 조직폭력배 등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채용 배치하고 폭력사태를 유발하는 등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업화된 폭력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경비업의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노사분규 등 이해관계 대립이 있는 일정 장소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장의 배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용역경비업체에 대한 경찰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상 나타날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법안 개정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환** 임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제13항, 제15항, 제24항, 제25항, 제28항, 제46항, 제53항, 제88항, 제90항~제92항 등 12개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는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존경하는 김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 업무와 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이상 6개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를 풀어 쓰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는 등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안을 내용 변경 없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직 중에 행한 금품비리가 퇴직 이후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환수 요건을 추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중독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린인터넷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장애인·고령자 등의 웹사이트상 정보 접근과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소방방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확대와 효율적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을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로 변경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에 예측되는 기관별·지역별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진을 풍수해보험 대상 재해에 포함시켜서 국민들이 자연재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의연금품 모집과 민간 모금기관의 모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연금품 모집 허가 방식을 영리활동 등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현행 모집심사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저수지·댐의 붕괴 등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댐의 위험저수지·댐으로 고시되면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간주토록 해서 위험저수지·댐의 정비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환** 맹형규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제9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되 보고서를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원탁** 수석전문위원 이원탁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91건의 법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재입법예고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입법예고 생략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은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입법예고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은 재입법예고 제도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제도를 신설하고, 둘째 임용 전 실무 수습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며, 셋째 수뢰·횡령 등의 비위로 인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명예퇴직수당 환수요건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력경쟁제도 신설과 명예퇴직수당 환수요건의 확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임용 전 실무 수습 중인 사람에 대한 공무원의체는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임용 전 실무 수습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없으므로 그 근거를 우선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양승조 의원, 박기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조 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공휴일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변경하며 어버이날을 공휴일에 추가하는 것이고, 박기춘 의원안의 주요내용은 공휴일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변경하며 어버이날과 한글날을 공휴일에 추가하면서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공휴일 법제화에 대해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으로서 휴식권 보장이라는 측면과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할수 있다는 측면에 대한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휴일수 보장을 통한 국민의 휴식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과 휴일 수 증가로 인한 기업의 생산 차질 또는 인건비 부담이라는 측면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등에 필요한 조

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을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웹접근성 품질 인증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중독 예방 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에 관해서는 거짓이나 허위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 및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김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관련된 소송에서 “한일합방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행위”라는 문구에 대하여 사법부가 이 문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일제로부터의 작위를 받은 수작(授爵)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전제하에 입법자인 국회가 당초 의도했던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는데 김을동 의원이 동일한 취지로 제출하였던 법사위원회 소관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준거법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관련 법률 간 내용을 일치시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하여 국민의 일관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서 제외된 이만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홍문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개념에 포함하여 전기자전거 이용 시 발생했던 각종 불편을 제거하고 전기자전거의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자전거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서 언덕길

이 많은 우리나라의 도로환경을 고려할 때 자전거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전기자전거가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용제한이 없어지고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 등도 통행할 수 있게 되면 일반 자전거에 비해 무겁고 속도가 빠른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개정안에 전기자전거의 최대속도와 차체중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전기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상 6건의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유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위가 명확해져서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을 자연재해 안전개선지구로 변경하고,

둘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 시에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셋째, 동 지구의 정비사업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의 수용 및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등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의 민원을 완화하고 사업추진을 신속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처럼 명칭 변경 및 인·허가의 의제, 토지 등의 수용·사용 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동 위험지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안은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의 명칭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인지 개선을 완료한 지역인지가 불분명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동 명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태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3항부터 제164항까지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강주**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갖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재외선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의 편의확대를 위한 사항입니다.

서병수 의원안, 김성곤 의원안, 원유철 의원안 및 유성엽 의원안은 현재 공관을 직접 방문해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편, 인터넷 또는 순회등록사무원을 통하여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외선거가 실시되었으나 등록 신청률은 5.57%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특히 영주권자의 경우 등록신청 및 투표를 위해 공관을 두 번이나 직접 방문하도록 되어 있어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자는 실질적으로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곤란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우편, 인터넷 또는 순회등록사무원을 통하여서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선거의 투표율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외투표 편의확대를 위한 사항입니다.

원유철 의원안은 현재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추가해서 우편투표 방법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파병군인이나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투표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대리투표·매표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단속 및 수사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원유철 의원안 및 유성엽 의원안은 공관 외의 장소에도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실질적인 투표권 행사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둘째, 재외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열 의원안, 주승용 의원안, 심재철 의원안, 진선미 의원안, 장병완 의원안 및 박기춘 의원안은 현재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되어 있는 부재자투표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부재자투표의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부재자투표 개시시간에 대하여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일과시간에 투표를 하기 어려운 부재자투표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므로 일과시간 이전으로 앞당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터넷 언론사 실명확인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언론사 실명확인제의 폐지 여부는 최근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넷째, 강기윤 의원 및 여상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자치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개편하여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그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청각장애인 선거인을 위하여 선거광고나 후보자연설을 하는 경우 수화 또는 자막을 반드시 방영하도록 하며 시각장애나 발달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을 위하여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하여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섯째,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선거대책기구의 경우 현재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소에 각 1개씩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일곱째, 박성호 의원 및 정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등록신청서류 및 선거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는 전과기록과 관련해서 박성호 의원안은 현재 금고 이상의 형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정희수 의원안은 전과기록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문 사본을 같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박병석 의원, 김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정식 의원,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의원안은 주요 경찰장비인 물포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분사기·최루탄 및 물포의 사용방법 등을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으로 이들 장비들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김한표 의원안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현재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규정의 입법 미비로 인하여 경찰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고 국민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셋째,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들은 내용이 유사하므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법적 근거 없이 경찰청 예규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우범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이 법안들은 우범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두 법안의 주요 차이점은 이한성 의원안이 정보 수집·관리 대상을 성범죄 우범자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이찬열 의원안은 성범죄는 물론 살인·강도 등 8대 범죄 우범자를 선정·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경찰청 예규에 의거한 우범자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있는 문제, 강력범죄의 재범화 경향이 강한 현실에서 우범자들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가 범죄예방에 매우 중요하지만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를 감안할

때 이 법안들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형이 종료된 성범죄 등 우범자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는 자칫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입법정책적인 결정으로 입법을 할 경우에는 성범죄 전과자가 성범죄를 재범하는 비율보다 다른 범죄 전과자가 성범죄를 범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찬열 의원안과 같이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넷째, 정청래 의원, 김경협 의원, 임수경 의원,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노사쟁의현장 등의 집단 민원현장에서 경비원의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가 심각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주 등 도급인,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병수 의원님께서 제9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해 주셨으면 좋을 뻔했습니다마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수 의원** 존경하는 김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누리당 해운대구 기장군갑 서병수 의원입니다.

오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드리고, 그리고 늦게나마 이렇게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외국민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2.53%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참여가 저조한 원인으로 재외국민들께서 선거에 참여하기까지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에 참여하기까지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교통과 지리적 여건의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투표율을 제고하고 또 궁극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증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도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많은 법률안들이 발의되었으나 논의가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임기 만료와 더불어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도 상당 기간 국회를 열지 못함으로써 등록신청이 개시된 지 두 달이 지난 오늘에야 법률안들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이 오는 10월 20일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되지 못한다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이 법안에 관해서는 네 가지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는 우편등록에 관한 것 그다음에 인터넷등록에 관한 것 등등입니다마는, 여야가 공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법안을 발의한 만큼 혹시 만에 하나라도 당리당략이라는 정략적인 어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이 늦추어져서 750만 재외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이 결론이 맺어져서 750만 재외에서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기다리는 우리 재외동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환** 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3개의 법률안 및 청원을 일괄 상정한 만큼 이에 대한 대체토론은 질의순서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들은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보다 심

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체토론 질의시간은 위원님 1인당 5분, 마감시간 1분을 해서 총 6분으로 질의시간을 하도록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민주당 백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경기 광명갑의 백재현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산바 태풍이 지금 오고 있는데 태풍과 관련된 일들은 잘 정리되고 있나요? 오늘 몇 시쯤 우리 한반도에 상륙을 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11시경에 남해하고 여수 사이로 상륙을 합니다. 상당히 앞당겨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강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거쳐서 오후 8시경에 속초와 강릉 사이로 빠져나가서 함경도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백재현 위원** 보도에 보면 상당히 중형급 이상이 되고, 매미에 못지않은 그런 위력을 갖고 있는 태풍이라고 하는데……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강도는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잘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비업법이 사회적으로 많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분규 현장마다 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장마다 소위 용역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두 부분이 서로 조정하고 협의하고 어떻게 타협을 봐야 될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깨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현상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백재현 위원** 그런 현상을 좀 고쳐보자는 뜻에서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경비업법 개정안을 낸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협 의원이나 임수경 위원님이나 같이.

그런 첨예한 데 대해서 경비업이, 특히 노사분규와 관련된 현장에는 기본적으로 용역회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노사분규에 용역이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백재현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예 자체 용역을 할 수 없게끔 하면 어떤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상되는 견해, 내용들이?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지난번에도 JSM인가요 거기서 아주 끔찍한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백재현 위원** 있었습니다. 현장마다 거의 투입되고 있고, 그것이 투입된 이후부터는 거의 해결을 더 못 찾는 거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아마 사주 쪽에서는 경찰력으로는 좀 막기가 어려운 경우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심하게 그렇게 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재현 위원** 그것을 경찰들한테 요청하면 경찰들이 그때그때 나와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 아니겠어요? 그 시설을 보호하고 뭐 만드는데 경찰이 와서 좀 막아달라, 경찰에 협조요청을 하면 경찰이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준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런데 경찰은 그동안에 쌓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은 나가서 하느라고 하는데 아마 사주 쪽에서 원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게 말하자면 대응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용역을 데려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강도 높게 대응할수록 해결의 실마리가 끊기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것은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렇다면 정부가 좀더 경찰력을 투입해서라도 그것을 완화시키고 해야만이 대화의 끈이 계속 이어진다고 저는 보는 견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찰의 내용들이, 경찰의 직무범위를 좀 확대하고 그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한 용역들의 행패라든지 만행 같은 것은 앞으로 좀 억제가 되어야 된다, 제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재현 위원** 하여튼 우리 소위에서 또 논의하겠지만 정부가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11총선과 관련되어서 기소시한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언제까지지요, 정확히 얘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6개월이니까 10월……

○**백재현 위원** 10월 9일인가요, 10일인가요 한 그쯤 되겠지요?

이제 그와 관련된 일들이 막바지에 오다 보니까 상당히 무리하게, 또는 최근에 선관위의 고발 사건들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신고 제보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선관위가 좀 적절한 입장을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법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일이겠지만 거의 6개월로 지역 간의 갈등, 후보자 간의 갈등 문제가 해소되고 있는 측면에서 더 새롭게 부각되는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 실지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그런 것과 관련된 조사내용을 심도 있게, 신중하게, 적절하게 처리를 해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백재현 위원** 덧붙이실 말씀이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저희 위원회는 신고 제보가 오면 사실 확인하고 신빙성이 있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백재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님께서도 재외투표와 관련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제 불과 대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백재현 위원** 그러면 이 법이 실효성 있게 만

들기 위해서는 이번 9월 달 정기국회 회기 안에 마무리를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입장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최대한 등록 신청에 관한 부분은 9월 중에 마무리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환 위원장, 고희선 간사와 사회교대)

○**백재현 위원** 우리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빠르시일 내에 하겠습니까마는 그와 관련된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될 수 있는 것과 되지 않을 것, 여야가 합의가 확실히 하는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들, 이런 부분들의 입장을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에 대해 미치는 영향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이미 법안은 다 들어와 있으니 그런 대안들에 대한 준비들을 철저히 해서 소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성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희선**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유승우 위원** 행자부장관 내지 소방방재청장님 오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상황실에 있어 가지고 차장이 왔습니다.

○**유승우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이나 또 우선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약간 부정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차장이 여기에 와 있으니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승우 위원** 예, 차장님이 좀 얘기하시지요.

○**소방방재청차장 방기성** 예, 소방방재청 차장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편의시설 설치할 때 피난용 계단 이송의자 등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근거를 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당연히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특정 소방시설만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 운

영상 다소간의 문제가 있고요.

또 시설을 설치할 하는 사람들에 지나친 재정적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이 자리에서 수용이 곤란하다 가능하다 하기 이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유승우 위원 본 위원님의 생각으로는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긴급재난 시 계단이송의 특별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규정을 해서 특별히 이동이 불편한 특수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재정적 부담을 우려해서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소방방재청이 그러한 이유를 대는 것은 하나의 무사안일주의와 관료주의적인 태도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록 의원께서도 유사한 것을 같이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병합해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안은 꼭 좀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애국가와 관련해서 행자부장관님, 이것을 법률로 제정하는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님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같이 분단국인 입장에서 지금 애국가 불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법률로 꼭 제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것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극기는 법령으로 되어 있는데 애국가하고 무궁화 같은 것은 관습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다른 국가 문장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유승우 위원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법률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님의 생각입니다.

노인복지청 신설과 관련해서 이 복지청이 별도로 되면 전체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정책적인 기능하고 집행기능하고…… 청은 보통 집행기능의 성격으로서 횡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청을 국가기관을 새로 하나 만드는 데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재외동포 같으면 재외동포청을 만들자, 노인 하면 노인청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외청을 신설하자는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자칫 효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낭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노인의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러한 생각은 상징적인 의미라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관심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할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우 위원 지금 소선거구제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함께 제가 건의를 좀 드립니다.

지금 기초의회 선거를 소선거구로 하는 안이 제출이 됐고, 또 정당공천제 배제와 관련해서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명수 의원의 안과 또 지금 여기에는 제출이 안 됐지만 이재오 정몽준 의원도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에서 일괄해서 병합심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희선 유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李燦烈 委員 수원시 장안구 이찬열입니다.

우선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거 즈음해 가지고 선거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李燦烈 委員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재판을 하거나 이런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더라도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너무 홍보가 없지 않나, 그것을 지금 후보자 자신들이 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총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 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 정확하게 홍보를 다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李燦烈 委員** 그다음에 행안부장관님께 26번의 노동조합관련 해직 공무원 관련한 특별법이 지금 홍영표 의원님으로부터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36명 정도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법부 최종 판결까지 거쳐있는 상태지만 특별히 정부 차원에서 이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장관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당초 징계 처분자가 2962명이 있었고요, 해직자가 506명이었는데 현재 132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도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들이 아직 있고, 그동안에 대법원 판결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사람들이고, 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떤 특별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할 경우에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또 사법제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구제되지 못한 분들의 경우는 아마 지금 현행법으로도 중징계처분의 대상이기 때문에 잘못 손을 대놓으면 조금 여러 가지 체제, 질서체제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李燦烈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인간적으로야 생각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만나보기도 했는데 참 안 됐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정말로 구제를 할 경우에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李燦烈 委員** 이분들이 개인적인 욕심을 차린 다거나 이러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래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기고 자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가급적 억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李燦烈 委員** 그러면 장관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길게는 200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이 지났는데 물론 그러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기간도 어느 정도 지났고, 이분들도 어느 정도 잘잘못을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같이 상존하는 그런 사회가 돼 가고 있는데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반드시 복직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 계실 때 해 주시면 큰 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위원님의 진심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李燦烈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희선**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윤재옥 위원** 새누리당 대구 달서을 윤재옥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범자 관리에 관한 근거 법률이 없어서 그동안에 예규로만 하다가 이번에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께서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8개 범죄를 정해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위험이 높고 사회안전망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또 인권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찰청에서 생각하는 우범자 관리의 법적인 제한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의견 제출을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면 법안 심사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청장 김기용** 알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리고 지금 노사분규 현장에 경찰 투입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김기용** 예,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경찰력 투입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모든 노사분규 현장에 사업주가 또는 노사 일방에서 요청한다 해도 모든 노사분규 현장에 경찰이 투입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맞는지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또 관련해서 법 개정을 여러 의원들께서 제출했는데 이게 과연…… 일부 의원들은 경비원을 아예 노사 분규 현장에는 배치를 하지 말자고 이렇게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분류 현장, 노사 분류 현장의 경비원 배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자료들을, 참고 자료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찰청장 김기용** 알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법안 심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관 시험과목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 김기용**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단순히 고졸 수준의 수험생들이 많이 응시하고 많이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정책적인 목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현장에 경찰력이 배치될 때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용되기 전 단계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는 필요도 있다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시험과목 변경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추진사항을 담당 국장이 한번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찰청장 김기용** 잘 알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희선**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경 위원님 대체 질의해 주시지요.

○**임수경 위원** 행정안전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난주에 국무회의에 상정이, 통과가 되었지요,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추가로 받기로 한 부분들?

더 추가 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밝혀진 희생자 수가 1만 4032명 되어 있는데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희생자가 약 3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연좌제나 기타 가족들의 피해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에서는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국무회의 상정 통과가 된 안에 의하면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더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게 그동안에 아마 제 기억으로 세 차례 정도 연장해서 신고를 받은 걸로 하는데 이미 다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게 작년이 아니라 지난봄

으로 기억합니다만,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4·3사태 유족 대표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따로 만나 가지고 얼마를, 이것을 굉장히 요구를 하기에 ‘언제까지 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본인들은 만족해 하고 제주도의 관련자들도 상당히 흡족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임수경 위원** 그 부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3만 명의 희생자로 파악이 되는데 현재까지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들어 주셨으면……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것은 앞으로도 살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굳이 ‘이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종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그분들을 만나 가지고 그 의견을 100% 수렴을 한 거거든요. 똑같은 그런 마음이 짐을 갖고 있습니다.

○**임수경 위원** 예.

최근에 장준하 선생 의문사 제조사 관련해서도 행정안전부에 배당된 것처럼 과거사 관련 법률 개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잘 알겠습니다.

○**임수경 위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제외 관련 선거에 대해서, 아까 서병수 의원님 제안하셨던 제외선거인 등록기간 연장 문제가 지금 현재 18대 대통령선거에서, 현재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지금은 신고 신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임수경 위원** 지금 현재 대선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라는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지금 현재로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임수경 위원** 영구명부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것은 장차 그쪽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임수경 위원** 장차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아니,

끝……

○임수경 위원 1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이번에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선거 때는 적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임수경 위원 정당 후보자 정보 자료를 제외투표소에 비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입법할 때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상당히 선거 일정상, 후보자 등록에서부터 투표 기간까지의 일정상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정당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어느 세계에 있는 재외선거를 도입하고 실시하는 나라보다는 더 계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입법화되어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임수경 위원 인터넷 게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는 가능합니다.

○임수경 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임수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행정안전부장관님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속기록이 지금 국무회의와 차관회의가 국가기록원 속기록 지정 대상에 빠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지금 국무회의의 경우는 청와대 것은 물론 하고요. 속기록 하고 있고,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도 전부 녹취록을 해서 청와대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수경 위원 그런데 2010년, 11년 국무회의 기록 작성 현황이 없다고 전병헌 의원 제안설명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기록원장이 그것을 기록물로 지정을 하면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경 위원 성실한 기록과 보존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임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희선 임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대체 질의를 해 주시지요.

○金永柱 委員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입법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중의 해양수산부 신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 해양수산부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 지금 국민들 대다수가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통합되고 나서 말이지요.

통합되고 있는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께서도 지금 해양수산부 신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대선 후보께서도 해양수산부 신설을 선거 공약으로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공약 공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당론으로 해양수산부 신설을 이번에 내놓은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업무와 국토해양부의 해양 업무를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고 또 바다가 육지의 4.5배 정도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우리 장관께서는 해양수산부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런데 사실 해양수산부가 지난번에 없어질 적에 부산 시민들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마 지금도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수산부 복원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정부조직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정부조직 관계가 검토가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金永柱 委員 물론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면 장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 자리에서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하기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永柱 委員 아니, 개인적인 소견을 제가 물

어보면 개인적인 소견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래도 속기록에 전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金永柱 委員**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장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개인적인 질문은 이따가 이것 끝나고 나서 위원님께서 제게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永柱 委員** 좋은 답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장관께서 나중에 한번 챙겨 보시고 말이지요. 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부 반응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검토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위원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자는 말씀인데 원칙적으로는 거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공무원 같은, 그러니까 국가공기업 임원 취업에는 제한이 없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金永柱 委員**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방향은 옳습니다.

○**金永柱 委員**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장관님께서 파악을 면밀히 해서 가지고 지난번 상임위 답변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신다 했는데 실무 담당자 측에서 혹시 헌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원 입법으로 해서 발의된 법이 깊이 아주 세밀히 들어가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 말이지요, 일부.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정도는 지방공기업법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저희들 검토를, 어차피 법이야 국회에서 고치는 거니까요.

○**金永柱 委員** 그러니까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永柱 委員**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이게 공직자들한테는 상당히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렇습니다.

○**金永柱 委員** 장관께서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金永柱 委員**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희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규 위원님!

○**이상규 위원** 행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 관련 연구소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국립방재연구원 말씀이십니까?

○**이상규 위원** 예, 그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게 원래 소방방재청 산하의 2차 기관으로 있었습니다. 소방방재청 밑에 교육 관련 기관이 하나 있었고 그 기관 밑에 있어서 재해 문제가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되는 데 비해서는 너무 규모도 작고 위치도 너무 아래에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난번에 작년 행정안전부 직속으로 해서 국가방재연구원으로 승격을 시켜서 확대를 했습니다.

○**이상규 위원** 확대 개편하셨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래서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의욕은 아주 굉장하……

○**이상규 위원** 지금 결과물 나온 게 좀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연구원이라고 해서 꼭 연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울산국립과학기술대학교하고도 연결을 지어서 그 학교의 재난·재해 관련되는 방재학과도 신설을 해 가지고 아마 지금 1기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기는.

○**이상규 위원** 당연히 할 일이 많을 거라고 보고 최근에 재난이 워낙 빈번할 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진이나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 본다면 우선 연구 부분에서 인력도 좀, 예산까지 확대가 되어서 종합적인 대책이 선제적으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위원님께서 이번 예산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위원** 예.

다음에 하천 관리에 관련해서인데요. 방재청은 소하천만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방재청에서요?

○**이상규 위원** 예, 소방방재청에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국토부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계류는 산림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방재청에서 소하천을 맡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장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재해라는 측면에서는 일원화해서 다루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분산이 되어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소방방재청에서, 그러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심이 되어서 재해와 관련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규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에 예산현액이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에 투입된 것은 4조 8000억, 그런 데 비해서 소하천에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2000억, 현저하게 불균형을 이루어 있는데 오히려 소하천의 제방 정비율이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방 정비만 잘해도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효과가 상당히 있을 텐데……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또 소방방재청 예산도 상당히 불균형, 아주 적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물론 이게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지만 행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재난 방지 차원에서 이 방안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재난과 관련해서는 뭐 저희들이 언제든지 개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가하천을 행안부가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규 위원** 해직공무원 복직 문제 아까 이찬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같은 뜻이니까 그냥 말씀만 드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분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지금 혹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이상규 위원** 10% 정도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답변을, 1차관이 담당이니까 답변 드리도록……

○**이상규 위원** 예.

○**행정안전부제1차관 서필원** 기본적으로는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2년간 계속해서 동일한 업무에 근무를 하게 되면 지금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직종으로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모든 부처에 걸쳐서 실제로 2년이 안 된 사람을 조금 빨리 전환을 시켜 주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마는 규정에 나와 있는 2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환이 안 된다는지 하는 이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규 위원** 이것 좀 결과를 정리된 것을 하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제1차관 서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규 위원**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김기용** 예.

○**이상규 위원** 최근에 어쨌든 성범죄가 워낙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성범죄나 또는 아동·여성 대상 범죄를 다루는 수사 담당자에 대해서 승진 우대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경찰청장 김기용** 별도로 성범죄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승진 우대나 이런 제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규 위원** 다른 부서나, 그러니까 공안이나 여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승진이 아주 낮다는 것이 일선 경찰들의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의 여지는 있을까요?

○**경찰청장 김기용** 그 부분은 성범죄 부분이 특별히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수사, 조직폭력이

나 마약이나 방화나 여러 가지 분야가 중요치 않다고 하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경찰이 지금 승진이 많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희선** 이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현 위원** 행안부장관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장준하 기념사업회에서 진상규명 요구서를 보냈고요. 조사를 재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이것 다룰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지금 저희들이 법을,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권한도 없고 어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처리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갈 때……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특별하게 어느 부처에 소속이 안 된 이런 것은 전부 행안부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판단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저희들은 거기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민원을 접수해서 이것을 다루기가 좀 뭐 하다 하는 그런 정도로 결론을 내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래서 민원으로 해서 그다음 수순은 어떻게 밟아 가실 것인지……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다음 수순은 저희 진상위원회에서 일단 그걸 논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은 지금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합니다. 조사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합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부에 특별법 및 제3기 의문사 조사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이 문제, 장준하 선생님 타살 의혹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조차도 타살 의혹이 있다라는 소견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과거사를 정권하고 무관하게, 정부의 성격하고 무관하게 진실은 밝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장관님이 단순히 민원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차원으로 그냥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주요하게 이런 역사적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은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과거사 문제는 그동안에 아마 아시는 대로 여러 차례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진상조사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죽 해 왔는데 어쨌든 거기서 아무런 결론이 못 났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은 좀 더 과제쳐야 되겠다, 진실을 규명해야 되겠다 하면 저는 의원님들이 앞장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현 위원** 저희도 물론 하지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지금 이걸 민원 처리를 받았고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현재로서는……

○**김현 위원**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은 아시다시피 새누리당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이명박 정부하고도 관련이 없는 사안 아닙니까? 박정희 정부 때 벌어졌던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재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은 이장을 하면서 장준하 선생님의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재조사를 해 달라고 유가족들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이것이 단순히 행자부장관으로서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보다 좀 적극적인 의미로 이 문제를 제기할 의향은 없는지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장준하 선생님은 저도 사상계를 읽었고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저희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되고 나니까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특별법이 마련이 되든지 해 가지고 그다음에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장관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어차피 청와대에 지금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고 해당 부서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

모호한 것을 행안부로 보내 가지고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또 시간 끌고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저희들은 시간 끌 생각은 없고요.

○**김현 위원** 적시한 지 꽤 됐는데, 2주가 넘었습니다, 지금. 2주가 되었습니다, 2주.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저희들이 곧 결론을 낼 겁니다.

○**김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을 주문해서 정부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제가 위원님 충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희선**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기선 위원** 강원도 원주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께……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해외 거주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입장에서 적어도 투표 등록 신청을 최대한 편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긴급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등록 마감일이 10월 2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 봐야 이게 본회의 까지 이번에 통과가 되면 불과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서둘러서 통과시켜야 된다 할 경우에 선관위 입장에서는 적어도 인터넷 등록하고 우편 등록만큼은 별문제가, 지금 단계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저희들은 지금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 신고·신청이 저조한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선을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순회 접수, 그다음에 가족 대리 신고·신청하는 부분, 이런 것만 돼도 상당히 편의가 보장될 수가 있거든요.

더 나아가간다면 우편 등록 신청 부분도 충분히 그것이 이 단점을 보완한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빨리 해 가지고 등록 신청

전에 입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이번 9월 이전에 이 법이 통과되면 시행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시행일은 여기에서 공표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 주면 적용을, 순회 접수라든지 가족 대리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한기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접경지역 특별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접경지역은 아주 특수한 지역입니다. 각종 우리 국방과 관련해 가지고, 국가 안위와 관련해 가지고 이중, 삼중의 여러 가지 제한 여건 속에서 살아가시는 대부분의 우리 지역들인데 여기를 현재의 예비타당성 기준과 요건 가지고 해서는 도저히 B/C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B/C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접경지역과 같이 이런 특수지역, 국가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희생하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지역은 더군다나 복지 측면에서도 강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집단복지 측면에서.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우선 원칙적으로 저는 위원님 생각에 100% 공감합니다. 수도권이라 그래 가지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는 북쪽으로 파주, 문산, 연천, 강화도 이런 데는 저는 수도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말 낙후될 대로 낙후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주 특단의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도권 지원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수도권 아닌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이 굉장히 또 반발을 많이 하시고 지방자치단체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수도권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하여튼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 그 문제는 저희 행안부 내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노력을 할 겁니다.

○**김기선 위원** 이번 기회에 이 부분만큼은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김기선 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이 법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검토하면서 시간이 촉박해서 그러는데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각도에서 이게 제출되었는데 그 중에서 본질적으로 국가상징물을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 예를 들면 국기, 국화, 국장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것을 전체를 하나로 통괄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법체계 속에서 다 다루는 것이 좋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한 행안부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게 사실은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가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고 무궁화에 대해서도 그게 꼭 국화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 17대 국회에서 통합 입법 여부를 논의했는데 국기에 대한 사항이건 이론이 없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만 법제화하기로 하고 다른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검토한다는 정도로 봐둔 것 같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것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리고 경찰청장님께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에, 지금 제출된 법안들을 죽 보면 진압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전부 법에 근거를 두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대와 장비의 발전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법에 직접 일일이 나열식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찰청장 김기용**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도 않고요. 현행법에도 시행령에 ‘등’으로 해 가지고 예시규정으로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행령이나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거기다 다 열거하는 일은 그렇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희선**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덕흠 위원** 보은·옥천·영동 지역구 박덕흠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사무총장입니다.

○**박덕흠 위원** 117쪽의 정희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2인 이상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모두 동보통신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20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박덕흠 위원**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입법 발의하신 의원님이 충분한 논거를 가지고 발의가 되신 건데요.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보면 인터넷매체의 특성이라는 것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매체는 기존 오프라인상에 있는 다른 매체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위에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을, 충분히 논의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제 생각은 개정안대로 된다면 선거기간에 단체문자를 보내는 것이, 그런 국민들은 전부 다 선거사범으로 잘못되면 그렇게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번, 120쪽의 김용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인데요.

현행법은 자신의 사무소에서만 무료 민원상담일 때 기부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경우에는 수시로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기 때문에 사무소가 아닌 휴대전화나 또 여러 가지 민원상담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래서 이런 현행법의 민원상담 장소 제한은 현실과 좀 거리가 동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좀더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소방방재청장님, 87쪽 고희선 의원님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인데요.

아시다시피 금년 봄과 여름 또 전국에 극심한 가뭄 또 태풍, 오늘도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많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 종류가 세분화되어 있고 부처별로 가뭄의 지수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가뭄 사전경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것은?

○소방방재청차장 **방기성** 가뭄에 대한 사전경보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뭄이 오게 되면 농림부나 산림청이나 또는 국토해양부의 각 댐 관리 거기서 별도로 다들 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 발령 기준 마련이 각 부처별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재청에서 한꺼번에 통합하는 경보발령은 쉽지는 않아요. 일단 각 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봐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감사합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김기용** 예, 경찰청장입니다.

○박덕흠 위원 이걸 이 내용하고 좀 상반된 건데,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듣는 게 불심검문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김기용** 예.

○박덕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반감을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도 불심검문을 당해 본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딱 잡아 가지고 불심검문을 딱 당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러면 꼭 내가 무슨 저기나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고 위축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 국민들은 경찰, 검찰이 딱 하면 죄가 없어도 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 갖고 좀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심검문이 좀더 인권침해 안 되도록 이렇게 잘해서, 사실 경찰관이 거리 순회만 하더라도 예방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꼭 불심검문 한다는 취지보다도 그런 취지를 살리고, 만에 하나 이게 잘못돼서 인권침해라는 그런 소리가 난다면 아마 경찰이 또 한번 큰 홍역을 잘못하면

치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해이해지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인권침해 소리가 안 나오고 정말 잘하더라는 소리를 듣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청장님?

○경찰청장 **김기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선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수시로 잘 시키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희선**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춘 위원님 어디 가셨지? 안 하시기로 했나?

박성호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박성호 위원 예, 시간이……

○위원장대리 **고희선** 그러면 추가질의 이찬열 위원님 해 주시지요.

○李燦烈 委員 이찬열입니다.

청장님, 지금 혹시 보고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대리 **고희선** 3분으로 정합니다.

○李燦烈 委員 예?

○위원장대리 **고희선** 3분.

○李燦烈 委員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인천의 콜트약기라고 지금 법원 판결에 의해서 명도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노조원들하고 대치 상태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李燦烈 委員 청장님한테 제가……

○경찰청장 **김기용** 예.

○李燦烈 委員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콜트약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해산 절차를 밟느라고 건물을 법원에 의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명도를 진행 중인데 거기의 노조원이 지금 3층 옥상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이고 뭐고 다 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경찰들도 거기 파견이 되어 있는데, 3층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노조원들에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것 그렇지 않도

록 잘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찰청장 김기용**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금 법 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조원들이 현장에서 있으니까 안전하게 법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청에서 청장이 나가서 지휘를 하고 있을 겁니다.

○**李燦烈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희선**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수경 위원님.

○**임수경 위원** 좀 전에 박덕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질의할 게 있습니다.

경찰청장님, 인권침해 문제 교육을 수시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이 이미 마련된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경찰청장 김기용** 불심검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직원들의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기는 한데 현장에서 직원들이 자칫 좀 안이한 생각으로 법적인 절차, 목적과 이유를 고지한다든지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달지 그 법적인 절차를 소홀히 해서 인권위원회나 이렇게 지적당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더 시키면서 한번 더, 앞의 절차로 본인들과 대화를 좀 해서 불심검문에 들어가기 전에 좀더 불심점, 좀 수상한 점을 발견하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든지 불심검문을 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좀 보완해서 매뉴얼을 내려 보내 왔습니다.

○**임수경 위원**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사안인가요?

○**경찰청장 김기용** 예, 그렇습니다.

○**임수경 위원** 좀더 좀 구체적으로……

사실은 불심검문, 뭔가 사안별로 즉각적인 어떤 이런 처방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더더욱 당부드리고요.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SJM 사태로 용역폭력 행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고 경찰 입장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입장에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현재 청장님 판단으로 경찰이 용역경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경찰청장 김기용** 그간에 관리상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법적인 불비가 조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같은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해도 규제할 수가 없달지 또 전과자를 채용해서 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제재할 수가 없달지 또는 지금 신고를 하고 나서 이렇게 법을 위반해도 처벌규정이 좀 미약하달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장구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인 그런 규제가 있어야 되는데 길이나 무게 이런 데 대한 규제가 없었다든지……

○**임수경 위원** 법적인 불비……

○**경찰청장 김기용** 예, 여러 가지가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수경 위원** 외에도 현행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경찰의 권한에서 경찰이 지금 현재 용역경비 인력에 대한 신원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김기용** 용역경비 인력에 대한 신원 파악은, 일단 경비업체에서 채용을 하기 전에 법적으로 제한된 경비원에 대해서는 채용하면서 하고요, 저희들이 배치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적격자인지 아닌지 교육을 받았는지 그런 심사를 하게 됩니다. 검토를 해서 배치를 취소하거나 이렇게 하지요.

○**임수경 위원**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상 사실 이런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요?

○**경찰청장 김기용**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임수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희선** 임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우 위원님!

○**유승우 위원** 행안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됐지만 저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서 시한을 또 5년 연장한다고 이렇게 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것이 어째 이렇게, 이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또 과감한 의지만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총 3046건 중에서 지금 59.6%, 1816건만 이양이 되고 1230건이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2009

년에 697건을 이양하겠다 결정을 했는데 아직 476건이 이양되지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근본 원인이 뭔지 말입니다, 이게 과감한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대정부질문에서 하셨던 내용인데 제 답변이 아마 충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보면 거기 나와 있는 통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 된 부분들 그것은 왜 안 되고 하니, 보니까 보통 한 2~3년이 걸립니다. 절차를 하는 데, 무슨 여러 가지 하여튼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 통과라든지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게 제대로 안 된 걸로 아는데요.

어쨌든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2000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숫자를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그 이유는 어쨌든 우선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숫자가 결코 적은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안 되는 이유는, 남아 있는 이유는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우 위원 예.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와서요.

금년 6월까지 1559건의 지방이양사무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에 22.5%인 350건이 이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1209건이 이양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이양이 확정된 후에 법령 개정이라든지 하는 그런 지방이양 완료를 위해서 법령 입안, 입법예고, 국회 심의로 최소한 1~2년, 길게는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1559건이라는 그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유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경찰청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평화적이고 비폭력적 집회에는 분사기, 최루탄, 물포 사용을 안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집회·시위를 보면 평화적이고 비폭력적 이것의

성격이 항상 애매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애매하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경찰청장 김기용 저희들의 입장은 집회가 불법인가 아닌가 판단이 우선입니다. 저희들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게 평화적이냐 아니면 폭력적이냐는 나중에 어떤 처벌의 강도의 문제일 뿐이고 평화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큰 도로를 점거하고 오랫동안 앉아서 있어서 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경찰 장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희선 유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종결에 앞서서 안내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전 법안 상정 시 여야 간사 간에 아까 71쪽 지방세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간에 상정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아직도 합의를 못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 간에 20일 날 상정과 심사를 하기로 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임수경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안건들이 법안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들께서는 소위 활동에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많은 법률안 및 청원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 위원(20인)

강기윤	고희선	김기선	김민기
金永柱	김태환	김현	문희상
박남춘	박덕홍	박성효	백재현
서병수	유대운	유승우	윤재옥
이상규	이찬열	임수경	진영

○위원 아닌 출석 의원(5인)

김경협	원혜영	이한성	한기호
-----	-----	-----	-----

황 주 홍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	원	탁
전 문 위 원	문	강	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	관	맹	형	규
제 1 차 관	서	필	언	
제 2 차 관	이	삼	걸	
경 찰 청 장	김	기	용	
소 방 방 재 청 차 장	방	기	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 무 총 장	이	종	우
---------	---	---	---